

(33)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(조특령 §115)

— < 법 개정내용(§117) > —

-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시장조성자에 **지수선물·옵션 시장조성자 및 주식 시장조성자 추가**  
(적용기한 '18.21.31.)
- 시장조성자의 정의는 시행령에 위임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추 가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<b>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정의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시장 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</li> </ul> </li> </ul>
<p>&lt;추 가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<b>주식 시장조성자의 정의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시장 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</li> </ul> </li> </ul>

**<개정이유>** 시장조성자의 정의 구체화

**<적용시기>**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